

경기도 음부즈만 의 결

의안번호 제153호

민원표시 88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소득 증빙서류의 부당성

2024년 8월 22일

신청인 ○○○

대표음부즈만 지영림

음부즈만 박치현

피신청인 경기도지사(○○○○과)

음부즈만 명광복

- 주 문
- 피신청인에게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 시행시 소득 증빙서류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소득확인을 위한 모집 시기를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 향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에 대하여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형평성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표명한다.

음부즈만 김안태

음부즈만 박형근

음부즈만 안연환

음부즈만 황종일

이 유 별지와 같다.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고자 한 청년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건강보험료가 과다 고지된 경우 소득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가 사업장 단위로 발급되는 서류이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직접 발급이 어려우므로 개인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음부즈만으로 제기하였다.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경기도 청년기회과) 검토의견

2024년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노동자이며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는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자가 건강보험료가 과다 고지된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로 정확한 소득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하나,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외에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를 통해 보험료 과다 고지 등 산출내역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사업 추진 시에는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이 필요한 신청자에게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의 서류 제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19세~39세,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청년노동자
- 지원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 소요예산 : 154억원(도비 100%)
- '24년 모집기간 : '24. 5. 31.(금) ~ 6. 17.(월) * 5. 24.(금) 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account.ggwf.or.kr>)
- 선발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인원 6,300명)

3. 사실관계

이 사건 고충민원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피신청기관의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신청인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청년노동자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시행하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위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신청하고자 한 청년이며, 피신청인은 동 '사업' 신청 시 건강보험료가 과다 고지된 경우 소득 확인 및 소명을 위해 발급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이하 '서류'라 한다)(정산보험료 반영분)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직인이 날인된 '서류'는 개인이 정부24 또는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 단위로 관리되는 서류로서 사업장의 관리자에게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는 등 발급이 어려운 서류라고 지적한다. 또한, 신청인이 사업장의 관리자에게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서류'는 직원 개인의 소득 내역만 기재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전체 직원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직원의 소득내역은 가림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사실상 발급 및 제출이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기간 중 ‘공단’(인천경기지역본부)에 협조 요청하여 개인이 ‘공단’에 요청하면 ‘서류’를 발급하도록 조치하였고, 다만, 일부 ‘공단’ 지사에서 작년에 비해 발급 요청건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건강보험료 담당자를 통한 발급 요청만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서류’ 외에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를 통해 보험료 과다 고지 등 산출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향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의 ‘서류’ 제출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1) 청년기본법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2)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청년을 말한다.

7.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률 및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격차 해소 등) ① 도지사는 양질의 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고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사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노동자의 복리 후생비, 복지포인트, 자산형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도지사는 청년지원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보건, 결혼, 보육, 교통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취약계층 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 1) 신청인이 문제를 제기한 증빙서류는 건강보험료가 과다 고지된 경우 소득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직인 날인)’이다. 해당 서류는 각 사업장의 담당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거나 개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요청하면 발급 가능하나 시간과 절차가 소요됨에 따라 사실상 개인이 발급하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 2) 따라서 건강보험료 소득 확인은 발급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외에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를 통해 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하고,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은 5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확인이 됨에 따라 참여자 모집시기를 여유를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4) 한편 향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과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에 대하여는 실제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형성성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소득 증빙서류 개선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정 본 입 니 다.

2024. 8. 22.

경 기 도 옴 부 즈 만